

■ 행정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 - 재개정(2022.04.06.)

현 행 조 . 항	개 정 (안) 조 . 항	비 고
제1조(목적) 이 행정학과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학칙 또는 학칙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졸업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좌 동"	
제2조(졸업논문 대체) 졸업 종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한다.	제2조(졸업논문 대체) 졸업 종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변경
제3조(시험시기) 학점 취득기준을 이수한 졸업(시험)대상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전기 졸업예정자 : 매년 12월 초 ② 후기 졸업예정자 : 매년 6월 초	제3조(논문제출시기)----- ----- ① 전기 졸업예정자 : 매년 10~11월 ② 후기 졸업예정자 : 매년 4~5월	졸업시험을 논문으로 변경 원활한 학사업무 처리를 위한 시기 변경
제4조(시험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합격으로 판정한다. ① 7학기 이수 기준 평균평점 4.0이상(4.5만점)-2019년부터 삭제 ② 토익 800이상 / 토플 ibt 70이상 / 텁스 695이상 / 토익스피킹 7급 이상 / 오피 IH(Intermediate High)이상 ③ 기업 및 정부기관의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입상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④ 각종 국가고시(5급, 7급 및 9급 공무원 공채)합격 및 국가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취득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⑤ 각종 자격증 취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정책분석평가사 2급 이상)	제4조(졸업논문면제) 논문면제요건총점제를 시행하며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면서 환산점수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제출을 면제하고 평가위원 심사를 통해 합격으로 판정한다. ① 환산표(별첨1)를 참고하여, 점수 합산 시 소항목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② 명기되지 않은 항목은 학과회의를 통하여 일정 점수를 부여함 ③ 자격증의 경우 입학 이후 취득분으로 한정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 ④ 외국어 능력검정의 경우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유효해야 한다. ■ 환산표 (#별첨1)	제4조 내용 전면개정 일부 항목 기준 완화

현 행 조 . 항	개 정 (안) 조 . 항			비 고
	항목	소항목	기준	
외국어	토익	900점 이상	70	
		800~899점	60	
	토플	100점 이상	70	
		90~99점	60	
	NEW텝스	320점 이상	70	
		300~319점	60	
		280~299점	50	
	오픽	IH 이상	70	
		IM3	60	
	텝스스피킹	60점 이상	70	
		55~59점	60	
	토익스피킹	160점 이상	70	
		140~150점	60	
	JPT	800점 이상	70	
		700~799점	60	
	JLPT	1급	70	
		2급	60	
	신 HSK	5급 이상	70	
		4급	60	
일반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1급	60	
		2급	30	
	정책분석평가사	2급	50	
		2-급 이상	60	
	KBS한국어능력시험	3+ 급	50	
		1급	40	
	한국사능력검정	2급	30	
		기사	50	
	정보처리	산업기사	40	
		2급	50	
	공모전	공공기관 주최	입상	70

현 행 조 . 항	개 정 (안) 조 . 항	비 고
제5조(출제 및 평가위원 위촉) 출제 및 평가위원은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학과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된다.	제5조(출제 및 평가위원 위촉) "좌 동"	
제6조(시험과목) ① 시험 문제는 행정학 2개 전공영역(행정학, 정책학)에서 객관식 및 주관식(논술)으로 출제한다. ② 출제기준 및 평가방법은 개강 후 45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험 문제는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논문작성) ①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등 행정학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를 학생이 자유롭게 정한다. ② 논문의 형식은 학사학위 논문 형식으로 하며 분량은 20~25페이지로 한다.	제6조 전면개정
제7조(평가기준) ① 각 영역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시험 미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불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하며 2차 시험도 불합격할 경우 해당 학기 졸업을 불허한다.	제7조(평가기준) ①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논문 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③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논문작성 시 표절률은 10% 이하로 하며 표절방지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제8조(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위 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임교수가 소집한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타) "좌 동"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매 학기 개강 후 45일 내에 공시한다.	